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 초과 제한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18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 초과 제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7. 16.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Ⅲ. 검토의견

1.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 초과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u>1.2배</u> 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⑩ ----- ----- ----- <u>1.2배(이하 “법정한도”라 한다)</u> 를----- ----- <u>. 이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등록금과 관련하여 제11조에서 각 학교는 (제3항)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또한 등록금은 (제6항)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제10항)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이하 “법정 한도”라 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대학등록금규칙”이라 함)」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2026년 기준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서는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이 2026학년도에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산정 기준]

구분	내용
등록금 책정	(법 제11조제3항) • 각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법 제11조제5항) •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
등록금 산정 기준	(법 제11조제6항)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u>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u> (법 제11조제10항) • 등록금 인상률은 <u>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면 안 됨</u>
	(규칙 제2조의2제1항) • <u>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u> • 학부와 대학원 구분 • 재난으로 인한 비정상적 학사운영에 따라 면제·감액되는 등록금 미포함
	(공고) •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66%) × 1.2배 = 3.19% 이하 * 등록금 인상률 산정 산식 $\frac{2026\text{학년도 평균 등록금} - 2025\text{학년도 평균 등록금}}{2025\text{학년도 평균 등록금}} \times 100 (\%)$ • 2026학년도 평균등록금 산출방식 - <u>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이 2026학년도에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u> • 학부 평균 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대학원 평균 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 (법) 고등교육법, (규칙) 대학등록금규칙, (공고)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이와 같이 현행법령 등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법정한도 준수 여부가 판단되므로, 특정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하회하는 등의 사유로 모든 계열이 포함된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령 체계에서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특정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되므로,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한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이 아닌 ‘연간 계열별 평균 등록금’으로 변경됨.

□ 개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경우,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등록금이 인상되던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현황에 의하면 의대를 둔 학교의 경우, 의대계열과 그 외의 계열 간 등록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¹⁾

1) 동아일보, 「학생 물리는 지방의대, 등록금 더 올려」 (2026.9.8.) 참고

□ 다만 학교에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A계열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경우, ① 상당부분의 교육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해당 계열 학생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② 필요한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정한도 하한으로 산정되던 B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을 법정한도까지 인상하여 B계열 학생의 등록금으로 A계열 학생의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 다른 계열의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통해 전반적 학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학과별 특성, 교수 방법 등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률적으로 계열별 상한을 두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가톨릭관동대 등 10개 기관은 등록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고비용 학문에 대한 적시 재정 투입이 차단되어 교육·연구 환경의 질적 퇴보로 귀결될 수 있고, 계열별 인상 한도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